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

제정	2009. 12. 08.
개정	2011. 03. 15.
개정	2012. 04. 17.
개정	2013. 04. 08.
개정	2013. 08. 14.
개정	2014. 02. 13.
개정	2014. 04. 02.
개정	2014. 10. 06.
개정	2015. 04. 27.
개정	2017. 06. 08.
개정	2018. 02. 09.
개정	2018. 08. 06.
개정	2018. 09. 10.
개정	2019. 01.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된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1.>

1. “평가위원회”란 선정평가, 중간평가, 단계평가, 결과평가 등 연구개발 과제의 평가를 위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9.1.31.>
2. “심의위원회”란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및 연도별 추진계획, 예산

의 조정·배분 등 사업기획과 협약의 해약, 제재조치, 사업비 조정, 협약기간 연장, 정산반납액 조정 등 과제관리의 의사결정을 위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9.1.31.>

3. “전문가”란 일정자격을 갖춘 산·학·연 등의 관계자를 말한다. <개정 2019.1.31.>
4. “서면평가”란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내용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31.>
5. “발표평가”란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와 책임자의 발표내용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31.>
6. “현장평가”란 주관연구기관·참여기관을 방문하여 제시한 연구개발 계획이나 결과의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9.1.31.>
7. “최종선정 심의”란 서면, 발표, 현장평가 등을 통해 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9.1.31.>
8.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1.31.>
9.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1.31.>
10. “참여기관”이란 주관연구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공동연구기관, 위탁 연구기관, 참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9.1.31.>
11. “신청과제”란 신규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 <신설 2019.1.31.>
12. “신규과제”란 신규 지원 대상으로 협약된 과제를 말한다. <신설 2019.1.31.>
13. “계속과제”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신설 2019.1.31.>
14. “종료과제”란 총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신설 2019.1.31.>
15. “사업담당 부서”란 연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9.1.31.>
16. “선정전담 부서”란 사업담당부서에서 계획한 평가의 평가위원을

전문분야에 맞춰 추천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9.1.31.>

17. “평가담당 부서”란 선정전담부서에서 추천하는 위원중에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평가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9.1.31.>

제2장 전문가 관리

제3조(전문가 명부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을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운영·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31.>

② 심의 및 평가위원은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인력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상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선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 보고 후,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에 사후 등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31.>

제4조(전문가 등록 및 활용) ① 제3조 1항에서의 전문가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등록하고, 평가·심의위원은 등록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31.>

1. 인적사항
2. 전공 또는 사업분야
3. 연구분야 또는 실무분야
4. 논문실적 또는 사업실적
5. 평가 이력사항
6. 그밖에 평가·심의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해야한다. <개정 2019.1.31.>

1.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 <개정 2019.1.31.>
2.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자
3. 대학의 조교수 이상 <개정 2019.1.31.>
4. 예산·재정 전문가로 실무경력이 7년 이상 <신설 2019.1.31.>
5. 법률, 회계, 지식재산권, 특정기술 등 전문자격 보유 <신설 2019.1.31.>

6. 그 밖의 위와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9.1.31.>

제3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선정평가, 중간평가, 단계평가, 결과평가 등 각 평가별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별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9.1.31.>

② 위원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한다.

③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규정 제10조, 제11조에 따르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2.13.> <개정 2014.4.2.>

1. 평가위원회 구성은 선정전담부서에서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제1항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9.1.31.>

2. 선정전담부서는 최종선정 예정 위원 수의 3배수를 추천한다. 이 경우 선정전담부서는 추출과정을 화면 또는 영상으로 저장·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4.4.2.> <개정 2019.1.31.>

3. 선정전담부서는 제2호 인원을 3~5일전(토, 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 평가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담당부서는 통보받은 추천순위에 따라 참석가능자 순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개정 2019.1.31.>

4. <조항삭제> <개정 2014.4.2.>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위촉 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은 배제하여야 한다.

⑤ 선정평가를 제외한 평가단계별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해당사업 담당부서에서 담당하며, 평가위원의 세부구성 및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4.2.13.> <개정 2014.4.2.> <개정 2018.2.9.>

1. 전 4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평가에 참여하거나 당해 사업 단계별 평가에 참여한 기존 평가위원을 중심으로 7인 내외로 구성하되, 평가

위원 부족 발생 등 필요시 동조 제3항 및 제4항의 선정평가위원 선
발절차에 따라 평가위원을 신규로 추가

2. 동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신규로 구성 및 선
발

⑥ 평가위원회의 진행을 보조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02.02.> <조항이동 2018.2.9.> <개정 2019.1.31.>

⑦ <삭제 2019.1.31.>

제6조(평가위원회 분과구성)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평
가위원회를 분과별로 구성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의 전문
성, 보안유지, 평가태도 등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 대한 심사를 하여
<별표2.>와 같이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0.6.> <개정 2019.1.31.>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불성실” 판정을 받은
위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개정 2014.10.6.> <개정 2019.1.31.>

1.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의 자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금품수수, 업계 이면협상 등 부정행위가 밝혀진 경우
3. 평가·심의 서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인 경우
5.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6. 그 밖의 전문가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
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다만, 심의 안전에 따라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8.2.9.> <개정 2019.1.31.>

② 심의위원회 구성절차는 제5조 제5항의 선정평가를 제외한 평가단계
별 평가위원회 구성 절차와 같다. 또한 심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 회계,

지재권, 요소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2.9.>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협약의 해약, 제재조치, 사업비 조정 등 과제관리에 있어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2. 과제 종합심의 시 선정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심의·조정
3.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31.>

④ 전문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심의위원 위촉, 심의안건 작성, 심의대상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⑤ <삭제 2019.1.31.>

⑥ 전문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31.>

⑦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술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1.31.>

⑧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9.1.31.>

⑨ 심의위원회의 진행을 보조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1.31.>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삭제 2019.1.31.>

제10조(위원의 참여제한)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정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전문가는 해당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2.9.> <개정 2019.1.31.>

1. 평가·심의 대상과제의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자 <개정 2019.1.31.>
2. 평가·심의 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최종학위지도교수 및 학생관계인 자 <개정 2019.1.31.>
3. 평가·심의 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개정 2019.1.31.>
4. 평가·심의위원 허위 이력 및 경력 확인자 <조항신설 : 2013.08.14.> <개정

2018.2.9.> <개정 2019.1.31.>

5.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 <신설 2019.1.31.>

6.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상호간 평가자 <신설 2019.1.31.>

7.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을 한 자 <신설 2019.1.31.>

8.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19.1.31.>

9.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자 <신설 2019.1.31.>

10. 해당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한 자 <신설 2019.1.31.>

11. 그 밖의 평가·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9.1.31.>

② 연구개발 과제의 평가·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과제의 연구자문, 연구원 및 사업수행 등 어떠한 형태로도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사업특성상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31.>

제4장 평가

제11조(평가의 구분)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구분은 “선정평가”, “중간평가”, “단계평가”, “결과평가”, “추적평가”로 분류한다. <개정 2019.1.31.>

제12조(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5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전검토 이후 평가위원회를 실시한다. <개정 2019.1.31.>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 지원과제의 선정을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현장평가, 최종선정 심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31.>

③ 신청과제 선정평가 시 우대 및 감점 기준은 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부여방법은 각 평가별(서류평가, 발표평가) 평가점수에 부여(가점에 따라 만점을 초과할 수 있고, 감점에 따라 0점 미만일 수 있음)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공고 시 가·감점 항목 및 부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1. 3. 15.> <개정

2014.4.2.> <개정 2018.2.9.> <개정 2019.1.31.>

④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1인을 제외한 산술 평균점수로 계산한다. 다만 동일 평균점수 취득 시 총점으로 순위를 정할 수 있고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기술부문의 취득 점수,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의 취득점수, 연구개발 사업비가 적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공고 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9.> <개정 2019.1.31.>

⑤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연구개발계획서 및 평가 관련 서류를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검토하고,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전검토 결과 사업공고에서 명시한 결격사유 및 수행관리지침 제5조(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31.>

⑥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공고된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연구 내용과의 관련성 포함) <개정 2013.4.8.>
2.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이전에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 이나 “불성실 수행” 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개정 2013.4.8.>
4. 관련 규정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타당성
5. 연구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 · 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9.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조항신설 2013.4.8.>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조항신설 2013.4.8.>

⑦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 선정 시에 후순위 예비과제를 평가점수 순위로 선정하여 협약체결 포기, 협약서류 미제출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

했을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31.>

⑧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시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의 전자평가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31.>

⑨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제13조(중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수행현황을 확인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 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6.8.>

1.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 통과

2.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 중단(불량)

가.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성실중단

나.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불성실중단(극히 불량)

③ 제2항에 따른 “성실중단” 인 경우는 과제를 중단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극히 불량)” 인 경우는 과제를 중단하고 연구개발사업협약 및수행관리지침 제3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불성실중단(극히 불량)” 인 경우는 목표달성 수준 및 성실 수행 수준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6.8.> <개정 2019.1.31.>

④ 제2항 및 제3항의 성실한 수행여부의 판정은 제15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17.6.8.>

⑤ 상대평가를 실시한 경우 상대평가에 의한 중단은 “성실중단” 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7.6.8.> <개정 2019.1.31.>

제14조(단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제에 대하여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시점에서 연구개발결과 및 연차과제수행계획서를 근거로 계속 수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단계평가(연차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9.1.31.>

② 단계평가는 서면 및 발표평가, 현장평가, 중간모니터링 등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9.1.31.>

③ 단계평가는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진도점검 결과를 평가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31.>

④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6.8.>

1.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

2.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중단(불량)

가.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성실중단

나.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성실중단(극히 불량)

⑤ 제4항에 따른 “성실중단” 인 경우는 과제를 중단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극히 불량)” 인 경우는 과제를 중단하고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제3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불성실중단(극히 불량)” 인 경우는 목표달성 수준 및 성실 수행 수준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6.8.> <개정 2019.1.31.>

⑥ 제4항 및 제5항의 성실 수행여부의 판정은 제15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17.6.8.>

⑦ 상대평가를 실시한 경우 상대평가에 의한 중단은 “성실중단” 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7.6.8.> <개정 2019.1.31.>

제15조(결과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사업 수행완료 후 개발 결과물을 근거로 결과평가(최종평가)를 실시하며 진도점검 결과를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7.6.8.> <개정 2019.1.31.>

② <조항이동 2017.6.8.>

③ 결과평가 결과에 따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6.8.>

1.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 성공(최우수)

2.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고 90점 미만인 경우 : 성공(우수)

3.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고 80점 미만인 경우 : 성공(보통)

4.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 실패(불량)

가.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성실실패

나.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불성실실패(극히 불

량)

- ④ 제2항에 따른 “불성실실패(극히 불량)” 인 경우는 연구개발사업협약 및수행관리지침 제3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목표달성 수준 및 성실 수행 수준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6.8.> <개정 2019.1.31.>
- ⑤ 제3항의 성실 수행여부의 판정은 제15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17.6.8.>

제15조의1(추적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종료 후 3년 이내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결과의 사업화 성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기술적 효과 등을 평가(이하 “추적평가”) 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은 전문기관의 자료요청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조항이동 2017.6.8.> <개정 2019.1.31.>

제15조의2(성실 수행의 인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중단 및 실패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6.8.> <개정 2019.1.31.>

-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② 제1항 3호의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체계성 등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신설 2017.6.8.> <개정 2019.1.31.>

- 1. 연구노트, 기술문서, 도면, 실험결과, 시험성적서 등 중간산출물의 체계적인 구비 정도
- 2. 사업비 집행의 충실성 <개정 2019.1.31.>
- 3. 다양한 연구방법 시도, 외부자문 등 보완노력의 수준
- 4. 특허, 매출 등 정량적인 성과의 수준

제16조(평가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19.1.31.>

1. 종합평가점수 및 종합평가의견 <개정 2019.1.31.>

2. 그 밖의 협약해지, 제재조치 결정 등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31.>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심의결과를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19.1.31.>

1. 협약변경 중 승인사항에 대한 결정사항

2. 종합심의결과, 종합심의의견, 제재조치 여부 및 조치사항, 제재조치 관련근거 <개정 2019.1.31.>

3. 그 밖의 예산변경 검토의견 등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31.>

제17조(이의신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해당기관의 장은 제16조에 의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4.8.><개정 2018.9.10.> <개정 2019.1.31.>

②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 선정평가결과,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평가, 상대평가에 의한 탈락 관련사항은 이의 신청에서 제외한다.

③ <조항신설 2013.4.8.> <삭제 2019.1.31.>

④ <조항신설 2013.4.8.> <삭제 2019.1.31.>

제18조(평가결과물 등 과제 관련 자료의 보존)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별로 평가완료 후 평가표, 평가결과물 및 결과물 등 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별도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보안유지) ① 전문기관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 및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한 자는 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을 무단으로 공표하거나 업무 수행 시 지득한 기술이나 사업상 기밀에 속하는 비밀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참여한 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공표가 있기 이전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제20조(위원수당 지급)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및 심의를 수행한 위원에게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기간이 종료된 지원과제의 정산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기간이 종료된 지원과제의 정산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1.3.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4.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2.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1.3.15.> <개정 2012.4.17.> <개정 2015.4.27.> <개정 2018.8.6.> <개정 2019.1.31.>

평가(심의)위원 수당 지급 기준

1. 평가(심의)와 관련하여 평가(심의)업무를 수행한 위원 및 평가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평가(심의)장에 참석한 위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2. 평가(심의)위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전문기관의 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직원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해외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반경비 등을 고려하여 실소요액 기준으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1일 초과, 합숙, 재택 등 통상적이지 않은 형태의 평가진행의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위 : 원)

구분	지급금액	비고
평가(심의)수당	(100,000원/1시간) (최대 600,000원/1일 6시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 실소요액 · 위원장 : 한도 (1일 최대 600,000원) 외 100,000원의 초과수당 지급 · 미참여 위원: 평가에 참석을 했지만 합당한 사유로 참여를 기피한 경우 최소 100,000원 이상 예정액 한도 내에서 실참여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별표 2.> <개정 2012.4.17.> <개정 2014.10.6.> <개정 2018.2.9.> <개정 2019.1.31.>

평가(심의)위원 심사 기준

내용	등급기준
성실	○ 평가(심의) 전반에 매우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보통	○ 평가(심의) 전반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미흡	○ 당일 불참통보 ○ 타당한 사유가 없는 지각(20분 이상) ○ 일정 조정 요청(조기 종료 요청 등) ○ 평가(심의) 지침사항 미이행(휴대폰 및 SNS 사용 등) ○ 부적절한 질의, 질의수준 또는 작성된 평가의견 미흡 ○ 그 밖의 평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불성실	※아래와 같이 명백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예고 없이 평가(심의) 불참, 장시간 평가장소 무단이석(1시간 이상)한 경우 ○ 근거 없는 비방, 유언비어 배포 등 평가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 평가(심의)대상과의 이해관계자임에도 진흥원에 통보 없이 심사에 참여한 경우

* 불성실인 경우는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 참여배제 가능

* 미흡이 최근 1년간 2차례 이상일 경우는 불성실로 처리 가능